2021년도 제3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　　시 : 2021. 11. 5.(금요일)

o 방　　법 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

- 심의위원 : 권헌영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박정인, 임형주, 홍지만 위원

o **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**

○ **의결사항** ※ 안건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·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o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1건(안건번호 제2021-153776호~제2021-153825호).
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순번 1~50번의 각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. 단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으로 족할 것임.

- B 위원: 부결대상 안건 없습니다. 모두 가결처리함이 상당합니다.

- C 위원: ○○○○ 사이트의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 도둑들 등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 영화 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조의 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 이에 모두 가결 의견임.

- D 위원: 순번 1번 ~ 50번 {'○○○○' 사이트의 (영화) 아미 오브 더 데드: 도둑 들(2021)' 등 51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E 위원: 순번 1번~50번, 51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,

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1년 제3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11. 5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김민아

위원 박정인

위원 임형주

위원 홍지만